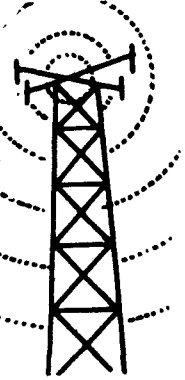


10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계란수입과 업계의 충격

상공부에서 공고한 후반기(79년 7월 1일부터 시행)수출입 기별 공고에 보면 외국에서 식란 및 그 처리 제품이 자동승인 품목으로 되어있어 수입이 자유스럽도록 개방되었다.

물론 정부의 수입자유화 방침에 따라 언젠가는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예견하였으나 그 시기가 의외로 앞당겨 졌고, 국내 생산기반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요즈음처럼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양파, 마늘 등 농축산물의 수입부작용이 큰때에 다시 수입이 개방되므로써 업계에 더욱큰 충격을 준것 같다.

참고로 수출입 기별공고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CCN

0405. 조란과(鳥卵)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것에 한하며 감미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조치사항

1. 다음의 것은 농수산부 장관의 추천분에 한함

- ① 닭의 부화용 종란
- ② 기타의 것은 자동승인 품목임

0202.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기니아새로서 죽은 것에 한한다.)와 그 식용 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며 설육에 있어서는 간장을 제외한다.)

조치내용.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공부 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요령에 의함.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번 개정 발표된 금년도 후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에 의하면 종란을 제외한 모든 식란과 凍結卵, 卵粉 등을 자유로 수입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수입금지 품목이던 식육 및 그 가공품등도

육가공업체 축산진흥회등이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수입할수있게 되었다.

금년초 정부는 (3월 7일)농산물 수입개방을 3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것이며 제1단계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것, 2 단계로는 옥수수 밀등 국제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품목, 제 3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순으로 수입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축산물 중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가장 먼저 계란이 이번에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진것이다.

사료등 대부분의 생산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설사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수입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양계인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는 고용문제도 있는 차제

에 시기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개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현재로는 계란의 경우 관세가 30%로 되어 있어 국내시장을 교란할 정도의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나 벌써 일부 제빵 회사에서는 卵粉등을 시험수입하여 채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10%이상이 소요되는 공업용 계란 수요가 크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할경우 가격을 보면 표와 같다(79년 상반기 기준)

현재 (9월 22일 기준)대란 가격을 32원으로 보고 대란 1개의 무게를 57.5g 으로 계산할 경우 농장 출하가격으로 kg당 556.5원이 되어(껍질포함가격) 표에서 보는바와같이 냉동액란의 국제가격이 311원 부터 448.6원 까지로 관세 및 제비용을 부과해도 국내 공업

계란 수입가격

(kg당 원)

		조	란	액	란	액	난	황	전	난	분	난	황	분	난	백	비	고
미	국	6,489.94				759.2			1,484.0		1,335.0			970.6				79년
총	공	911.4		423.4									1,373.2		325.9			기
이	스			311					1,108.8									일본의
필	란			320.5														수입가격을
남	아			366.2		734.4									309.7			원화로 환
오	스			448.6		856.6					1,868.0			321.1				산표시한것
뉴	질			401.5					1,556.5									임.
덴	마					701.4									2,542.8			
영	국					39,792.3												
E	C					704.9									2,313.1			
스	웨								1,334.2		15,126.5				2,641.1			
루	마								1,400.3									
홀	랜														2,710.8			
서	독														2,635.5			
이	태														398.9			
카	나														1,046.4			
브	라														345.0			

용 또는 요식업소용으로 수입될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 양계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생산비 절감만이 있을 뿐으로 이번 기회에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의 기획에 의하여 양계산업을 발전 시킨다는 생각 보다는 가격 경쟁에 의한 효율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가져와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될것이다.

둘째. 양계업자는 자기가 알고있는 지식과 기술이 절대적이며 어떠한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낙오 될것이며 항상 새로운 기술습득과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셋째. 낭비적이고 생산저해적인 정부의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여 양계인 각자의 개

인적 창의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주어야 될것이다.

넷째. 양계인 개인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공동방역이나 가공 유통분야에서정부의 지원이나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필요없는 생산비의 증대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며 쇠퇴기에서와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기 때문이다.

닭 사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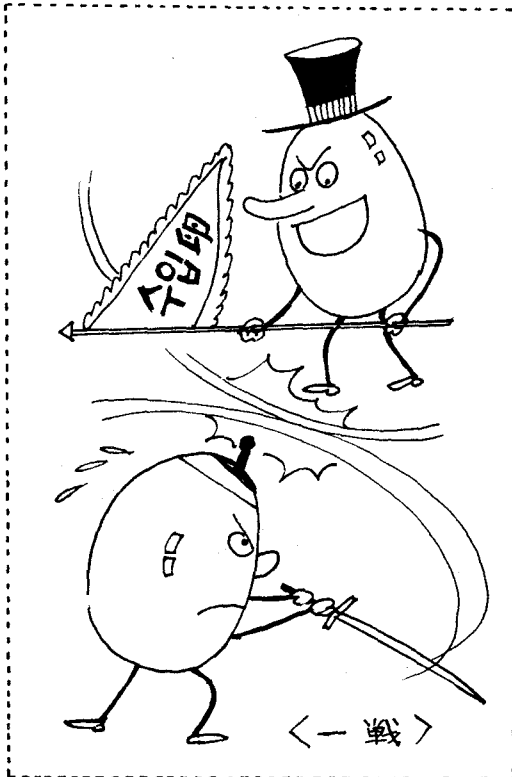
6개월간 23.7%증가

농수산부의 79년 6월말 가축통계가 잠정 집계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된 수수를 보면 78년 12월 31일 40,753,249수에서 50,412,505수로 23.7%가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여름철 육용계 및 육성계의 수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6월말 통계 수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사상최대라고 수수가 급증했던 78년말 수수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5,000수 이상의 양계농가가 2,246호나 되어 최소한 이들이 양계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사육하고 있는 23,472,246수(46.6%) 부터 단결하여 안정된 양계 발전을 위한 지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본다.

아직도 양계산업은 백십만 양계가족을 거느린 대산업이면서도 그 중요성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을 모으지 못한 때문이다.



· 닭사육 규모별 사육마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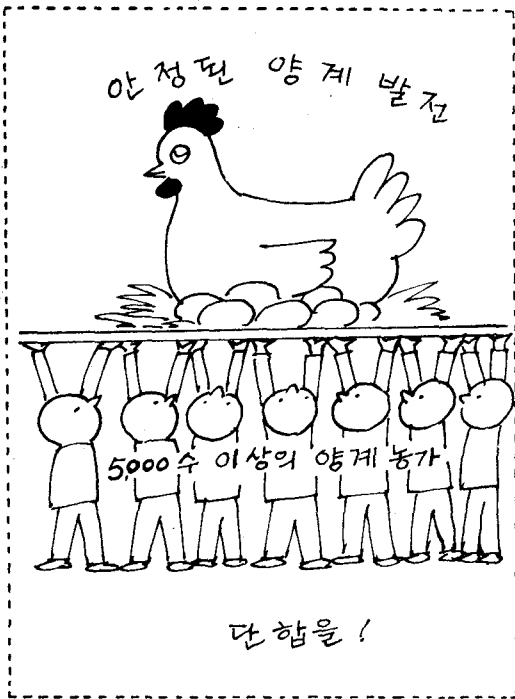
구분	계	1~19 마리	20~49	50~99	100~ 499	500~ 599	1,000~ 1,499	1,500~ 1,999	2,000~ 2,499	2,500~ 2,999	3,000~ 4,999	5,000~ 9,999	10,000마리 이 상
서울	544,840	1,260	480	500	400	3,500	10,500	20,850	28,500	41,500	175,050	144,300	118,000
부산	780,344	1,550	230	700	4,700	33,900	34,680	36,790	38,750	17,700	82,254	96,000	433,090
경기	19,545,465	505,830	131,730	16,710	49,886	227,712	491,798	469,567	1,037,708	542,154	3,027,500	50,395,593	8,005,277
강원	2,290,935	352,800	99,840	14,260	12,268	40,944	56,485	51,501	136,121	47,145	271,820	498,350	709,401
충북	1,776,857	416,840	87,580	10,890	15,545	40,010	56,083	57,457	105,056	68,996	303,800	426,600	188,000
충남	4,857,805	1,134,520	237,140	22,110	41,707	147,408	218,505	178,906	315,780	188,326	771,924	862,310	738,969
전북	3,514,737	1,504,900	554,730	47,680	50,325	127,699	123,316	92,725	70,149	44,882	178,563	265,538	454,230
전남	4,473,827	1,777,810	230,350	26,670	45,537	100,218	146,440	193,630	165,800	133,571	484,000	456,400	703,381
경북	7,768,184	1,047,189	104,922	15,840	85,251	324,815	533,557	593,165	703,190	428,020	1,523,065	1,579,100	832,070
경남	4,295,011	783,260	99,020	9,730	66,401	245,431	281,479	261,160	224,290	146,550	576,853	785,997	814,840
제주	564,500	7,390	-	-	4,030	14,300	20,550	15,000	34,080	39,050	107,300	87,700	235,100
계	50,412,505	7,533,349	1,546,022	165,110	376,350	1,315,937	1,973,393	1,970,751	2,858,434	1,697,894	7,502,129	10,239,888	13,232,358

닭 사육 규모별 사육가구수

구분	계	1~19	20~49	50~99	10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499	2,500~ 2,999	3,000~ 4,999	3,000~ 9,999	10,000~ 마리 이상
서울	378	230	20	10	1	6	10	13	14	16	48	24	6
부산	461	250	10	10	15	51	31	23	19	7	25	16	4
경기	82,156	72,500	5,340	280	209	324	462	292	507	208	856	780	398
강원	54,054	49,300	4,070	230	52	58	52	32	66	18	78	81	17
충북	66,258	62,140	3,470	180	79	58	50	36	51	27	84	69	14
충남	167,443	156,060	9,680	370	182	219	197	111	154	73	216	137	44
전북	193,829	170,020	22,260	820	230	176	109	56	33	17	48	43	17
전남	270,691	259,690	9,550	470	197	162	131	122	81	52	135	73	28
경북	168,240	160,873	4,277	260	303	474	470	361	339	164	427	245	47
경남	139,579	132,960	3,930	150	278	356	246	163	109	56	158	123	50
제주	1,567	1,410	-	-	19	20	18	9	16	15	30	13	17
계	1,143,676	1,065,433	62,607	2,780	1,565	1,904	1,776	1,218	1,389	653	2,105	1,604	642

닭 연령별 성별 및 용도별 마리수

구분	연령별 성별 마리수									용도별	
	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미만			산란용	육용	
			계	암컷	수컷	계	암컷	수컷			
서울	544,840	123,150	15,160	14,830	330	406,530	406,400	130	463,590	81,250	
부산	780,344	187,590	229,890	229,720	170	362,864	362,506	358	663,464	116,880	
경기	19,545,465	8,357,893	1,786,829	1,683,036	103,793	9,400,743	9,366,543	34,200	13,370,154	6,175,311	
강원	2,290,935	1,349,006	299,674	235,461	64,213	642,255	635,931	6,324	840,604	1,450,331	
충북	1,776,857	1,275,550	239,940	169,104	70,836	261,367	248,168	13,199	304,994	1,471,863	
충남	4,857,805	2,208,271	947,606	691,260	256,346	1,701,928	1,681,546	20,382	2,787,784	2,070,021	
전북	3,514,737	987,865	1,709,971	1,153,052	556,919	816,901	796,368	20,533	1,248,177	2,266,560	
전남	4,473,827	1,809,351	1,246,109	869,553	376,556	1,418,367	1,377,875	40,492	1,995,770	2,478,057	
경북	7,768,184	2,035,040	1,503,767	1,264,110	239,657	4,229,377	4,190,903	38,474	5,771,089	1,997,095	
경남	4,295,011	1,814,812	627,181	494,947	132,234	1,853,018	1,828,985	24,033	2,499,279	1,795,732	
제주	564,500	126,060	119,650	104,270	15,380	318,790	299,710	19,080	478,816	185,690	
계	50,412,505	20,274,588	8,725,777	6,909,343	1,816,434	21,412,140	21,194,935	217,205	30,423,721	20,088,790	



목장용 초지에는 취득세 면제

정부는 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목장용 초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재산세도 면제 내지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 제 7조 1항에 의하여 조례로 각 시장군수에 위임토록 하였는데 이로써 목장용 초지에 대해서는 78년 말까지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것을

80년 말까지로 감면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목장용 초지에 한한것으로 앞으로는 축산물을 자급할 때까지는 초지 이외의 목장용 토지건물에 까지 확대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시달된 조례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장용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과세면제에 대한 사무처리는 시장 군수에 게 위임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초지를 조성하지 않거나 조성된 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초지기준은 면적은 젖소는 1두당 0.5헥타, 한우와 육우는 0.3헥타로 제한한다.

재산세의 경우도 79년 9월 4일 이후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조례시행 이전에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는 그 가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만을 부과한다. 조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 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수 있다.

목장용 초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준칙)

79. 9. 4 시달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장용 초지 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제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목장용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주장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초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성된 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3. 초지기준면적(유우는 1두당 0.5헥타, 한우 및 육우는 1두당 0.3헥타)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제 3 조(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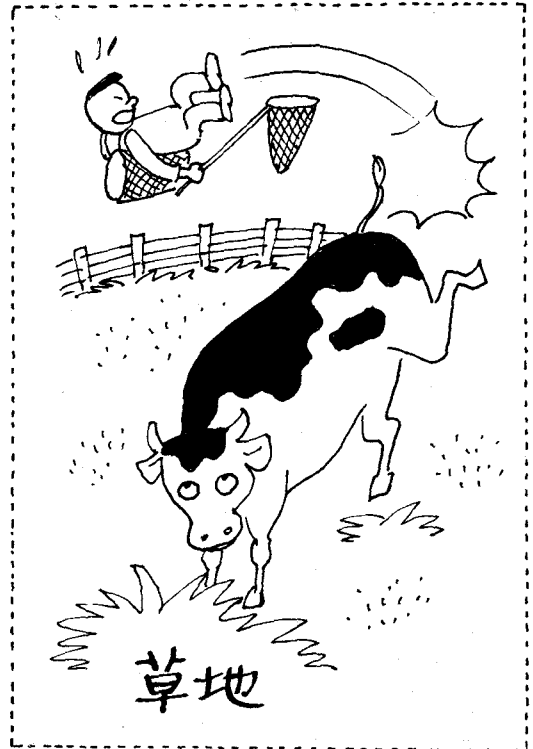
제 4 조(면제신청)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준칙)

79. 9. 4 시달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목장용 초지 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감면)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초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초지로 조성된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2. 초지기준면적(유우는 1두당 0.5 헥타 한우 및 육우는 1두당 0.3헥타)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제 3 조(적용세율) ① 이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성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조성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5년간 계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기간이 경과된 초지와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 1항 제 1호 제 5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조 동항 동호 제 4의 2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 4 조(면제신청) ①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74.12.27)

1. 토 지

(1) 주거용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100평 이하 1,000분의 3

100평 초과 1,000분의 5

200평 초과 1,000분의 10

300평 초과 1,000분의 30

500평 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그 가액에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개정 78. 12)

3년 이하 1,000분의 50

3년 초과 1,000분의 70

5년 초과 1,000분의 80

7년 초과 1,000분의 90

10년 초과 1,000분의 100

(4) 삭제(78. 12)

(4)의 2. 전·담·과수원·임야, 그 가액의 1,000분의 1(신설 76. 12. 31)

(4)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6(신설 76. 12. 31)

(5) 제 1 목 내지 제 4 목의 3 이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개정 76. 12. 31)

2. 가 옥